

#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9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의자 : 박은경, 한근수, 정현미,  
손정자, 김동훈, 이정애

## 1. 제안 이유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젊은 군 장병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민지원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안전교육, 안전 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협력체계 강화 및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5. 관련법령 :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병역법」
- 다. 「군인사법」
- 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 「군인 재해보상법」
- 바. 「국방 재난관리 훈령」

##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 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①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장내용 및 금액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 재정수반 요인

○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①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장내용 및 금액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 3. 미 첨부 사유

○ 제4조 관련 : 군장병의 안전교육은 관할 군부대에서 정기·수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장병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음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곤란함

○ 제5조 관련 : 안전장비 등은 재난유형별로 각 소관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 시민안전관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재난 발생의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곤란함

○ 제6조 관련 : 경기도에서 총괄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군장병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안전관 이명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 13. (생략)

[시행일 : 2024. 7. 17.] 제3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 2024. 6. 27.] 제46조

##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 6. (생략)
- ② ~ ③ (생략)

## ☑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 10. (생략)

## ☑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
4.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
  - 가. 공무수행 중 사망
  -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시행일: 2025. 1. 17.] 제4조의2

## ☑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8조(대민지원 기본 지침)** ①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해당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타 군 또는 타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 받은 부대의 장은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 후 최대한 지원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대민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통제하고, 합참의 장은 대민지원 시 각급부대가 타작전사 책임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주요 전투장비의 투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 또는 통제하여야 한다.

③ 대민지원 시 병력 및 장비 지원은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절차에 관한 훈령(합참 합동작전과)」에 따른다.

**제29조(대민지원사업 선정기준)** ① 각급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민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3.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4. 재해·재난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사업
5.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7. 민·관·군의 유대강화, 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8. 각종 법규에서 국방자원의 지원을 정한 사업
9.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각급 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대민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사항
2.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에 배치되는 사항
3. 군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4. 군사보안에 유해로운 사항
5. 군의 위상에 손상을 주거나 장병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사
7. 사업주체자의 수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항
8.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항
9. 외국인 또는 외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단, 국방부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사업은 제외
10.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와 관계없는 사항